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년 10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0년 10월 2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박도식

가. 개정이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재설계하여 구정 효율성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포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개정 내용

- (1) 안 제1조(목적)에서는 ~ 내지를 ~부터 ~까지로 법률용어를 순화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구본청 직제변경을 안 제9조 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보건소의 직제변경을 규정하였음
- (2) 현행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31과, 1추진반, 16동 170개 팀에서

-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34과, 16동 172개 팀으로 재설계되어 3개 과와 2개팀이 증가되었고 1개의 추진반이 감소하였음
- (3) 민선 5기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설된 부서(과)로는 행정관리국 생활안전과, 주민생활국 일자리진흥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 3개 과가 되겠으며 명칭변경과 함께 동시에 기능을 보강 또는 재편한 부서로는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행정과,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를 치수과,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위생과 등 4개과가 되겠으며 전산정보과가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
- (4) 신설된 팀으로는 생활안전과 안전도시팀, 교육지원과 도서관팀, 주택과 공공관리팀, 공원녹지과 경의선공원팀,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등 6개 팀과 정식기구로 승격된 일자리진흥과의 사회적기업팀, 일자리사업팀, 일자리지원팀이 되겠음
- (5) 기능축소, 유사, 중복업무로 통폐합된 팀으로는 감사담당관 조사팀, 총무과 대외협력노무팀, 기획예산과 정책통계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위생과 원산지지도팀 등 12개 팀이 6개 팀으로 조정되었으며 공원녹지과의 용강시범아파트정비팀이 폐지되었음
- (6) 부서간 팀 이동은 재난관리팀이 치수방재과에서 생활안전과,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생활안전과, 생활보장팀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행정과, 건축물정비팀이 주택과에서 도시경관과, 보건운영팀이 의약과에서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과 원산지지도팀이 식품안전추진반에서 위생과로 7개팀이 조정되었음
- (7) 기능개선에 적합하도록 명칭이 변경된 팀으로는 감사담당관의 민원조사팀

이 민원소통팀, 문화체육과의 체육팀이 체육진흥팀,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이 기획팀, 재무과 심사팀이 계약심사팀, 복식부기지출팀이 지출팀, 세무2과 체납징수2팀이 세무관리팀, 일자리진흥과 일자리정책팀이 사회적기업팀,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이 보육행정팀, 저출산보육팀이 저출산대책팀,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팀이 청소작업팀, 지적과 새주소관리팀이 도로명주소팀,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팀이 건설행정팀, 보건행정과 의료운영팀이 보건운영팀, 위생과 원산지관리팀이 원산지지도팀,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이 가족보건팀 등으로 15개 팀이 조정되었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민중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확대 강화하여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와 의료안심 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재편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업무량, 업무의 연관성 부서의 업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설계되었고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개정되었고 입법예고 등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국에서 과의 명칭이 유사한 의미를 상호 내포하고 있거나 관장

하고 있는 업무의 속성보다도 포괄적 개념의 부서 명칭이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연속성, 안정성, 신뢰성의 견지에서 과 또는 팀의 명칭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살리면서 신중하게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편의 후속조치로는 사무실 확보, 관련 서류 및 장부의 정비, 인력배치, 이에 따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